

청계천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 지정에 따른 건의안

의안 번호	1091
----------	------

발의연월일 : 2005. 3.

발 의 자 : 김복동 의원 외//인

1. 주 문

- 청계천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 유보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범위 축소 조정
- 100미터 이내의 지역 양각 27° 규정 폐지 또는 예외규정 도입후 지정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한 발굴조사결과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이 될 경우

첫째, 사적지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범위가 현재는 청계천 도로폭(50m)의 1.5배인 25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시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0m(6층), 50m(9층), 75m(13층)으로 제한을 받게 되며

둘째, 우리구의 대상토지 233필지 57,200㎡에 대한 청계천 주변 토지주 및 상인들의 사유재산권 피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셋째, 청계천 주변 노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이 사실상 추진 불가로 인한 주변 토지이용율이 저하됨으로써 청계천 일대 슬럼화 초래 및 도시환경 악화가 예상됨.

- 마. 따라서 위에서 주문한 내용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적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8만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것임.

3. 관련법규

- 가.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

청계천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사적 지정에 따른 건의문

- ☐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한 발굴조사결과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 ☐ 청계천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이 될 경우 청계천 주변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 ☐ 아울러 강남·북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강북지역은 규제 일변도로 도시계획이 추진되므로써 지역간 위화감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과 청계천 주변 토지주 및 상인들은 우리구 지역 실정에 맞는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지역중심지에 맞게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사적지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범위가 현재는 청계천 도로폭(50m)의 1.5배인 25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시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0m(6층), 50m(9층), 75m(13층)으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100미터 이내의 지역 양각 27° 규정을 폐지 또는 예외 규정을 도입한 후 지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구의 대상토지 233필지 57,200㎡에 대한 청계천 주변 토지주 및 상인들의 사유재산권 피해로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셋째, 청계천 주변 노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이 사실상 추진 불가로 인한 주변 토지이용률이 저하됨으로써 청계천 일대 슬럼화 초래 및 도시환경 악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 이상과 같이 청계천 주변 지역의 상업 및 업무수요를 우리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적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8만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5.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원 일동